

의안번호	제699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10월 2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9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(안 제11조)
-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(안 제12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“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”을“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설치·운영한다”를 “설치한다”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) 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
2.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·운영 및 관리
3. 특별교통수단의 환승·연계 지원
4.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5.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도지사는 시·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·연계를 위하여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를 <u>설치·운영한다.</u></p>	<p>제11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---- <u>설치한다.</u></p>
<p>제12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)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시·군 이동지원센터 간 연계</u></li> <li>2. <u>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시·군간 정보협력 및 지원</u></li> <li>3. <u>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</u></li> <li>4. <u>타 시·도 이동지원센터와의 연계</u></li> <li>5. <u>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</u></li> </ol>	<p>제12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)</p> <p>① <u>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</u></li> <li>2. <u>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·운영 및 관리</u></li> <li>3. <u>특별교통수단의 환승·연계 지원</u></li> <li>4. <u>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</u></li> <li>5. <u>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li> </ol> <p>② <u>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</u></p>

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 
매일 24시간 운영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

제14조의6(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) ① 법 제16조 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. 11. 16.>

1.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

가. 이동지원센터의 경우: 다음의 업무

- 1)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
- 2)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
- 3)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
- 4)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교육
- 5)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·운영 및 관리
- 6) 특별교통수단의 환승·연계 지원
- 7) 출발지·도착지·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
- 8)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
- 9)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·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

나.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: 다음의 업무

- 1) 특별교통수단의 환승·연계 지원
- 2)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)·5) 및 6)의 업무.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.
- 3)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)부터 9)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

- 4)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
2.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. 다만, 토요일·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·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